목 차

제1장 총칙

제2장 자격 및 임용

제3장 보칙

작성부서	교무처	제정일자	2012. 02. 10.

구 분	검 토			승 인
직 책	사무처장	교무처장	기획처장	총 장
서 명				
일 자				

개정이력		
개정 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
0	2012. 02. 10.	- 비정년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정
1	2013. 04. 04.	- 산학협력중점교수 산업체 경력 구체화 - 비정년전임교원 재임용평가 구체화
2	2015. 04. 27.	- 학칙 제56조 2에 의거 학과를 전공으로, 학과장을 주임교수로 변경
3	2016. 10. 13.	- 비정년 전임교원의 재임용에 따른 심사기준은 따로 정함 - 재임용 평가 시 총점은 임용기간 중 평균을 적용함
4	2017. 01. 26.	- 교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규명명칭 등 일괄 개정(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명칭 폐지)
5	2017. 06. 23.	- 계약제 전임교원의 기간제 및 계약제 전임교원 전환 기준 삭제
6	2017. 12. 18.	- 계약제 전임교원의 구분 개선
7	2019. 02. 22.	- 계약제 전임교원 승진 및 책임강의 시수 변경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.) 계약제 전임교원의 자격과 임용 절차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7.01.26.>

제2조(정의) 본 규정에서 계약제 전임교원이라 함은 계약제에 의해 임용되는 교원으로 교원인사관리 규정 제4조의2 제4항의 산학협력중점교수, 교육·지도전담교원, 교육·지도·산학협력전담교원, 학문연구전담교원을 말한다.<개정 2017.01.26.>

제3조(구분) 산학협력중점교원이라 하면 산학협력과 학생취업부분에 중점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하며, 교육·지도전담교원이라 하면 학생교육과 학생지도의 임무를 수행하는 교원을 말하며, 교육·지도·산학협력전담교원이라 하면 학생교육과 학생지도 및 산학협력의 임무를 수행하는 교원을 말하며, 학문연구전담교원이라 하면 특정한 분야의 연구를 전담할 목적으로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<개정 2017.12.18.>

제2장 자격 및 임용

제4조(자격) 계약제 전임교원은 이 대학교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서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개정 2017.01.26.>

1.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(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는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)
2. 교육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
3. 산학혁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(민간 산업체, 국가기관,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)이 10년 이상인 자<개정2013.04.04>

제5조(직위) 계약제 전임교원의 직위는 조교수로 하며, 사회저명도 등 특별한 경우 부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.<개정 2017.01.26.>

제6조(임용절차) 계약제 전임교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,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제청하고, 이사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7.01.26.>

제7조(임용기간 및 재임용) ① 계약제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.<개정 2017.01.26.>

② 계약제 전임교원은 소정의 업적평가를 통해 재임용할 수 있으며,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7.01.26.>

③ 계약제 전임교원의 재임용평가는 임용만료 4개월 이전까지의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17.01.26.>

④ 교육·지도·산학협력전담교원과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재임용에 따른 심사기준은 따로 정한다.<개정 2016.10.13.>

⑤ 계약제 전임교원의 재임용평가 결과 그 총점이 100점 만점 중 75점 이상(임용기간 중 평균)인 교원을 재임용 대상으로 한다.<개정 2016.10.13. 2017.01.26.>

⑥ 계약제 전임교원에 대해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여부를 결정하며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 퇴직 한다.<개정 2017.01.26.>

⑦ <삭제 2017.06.23.>

⑧ 계약제 전임교원의 재임용 평가 우수자는 승진할 수 있으며,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19.02.22.>

제8조(임용계약)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되,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10.13>

1. 임용기간
2. 연봉금액
3. 직무내용 및 책임강의 시수
4. 기타 계약조건(사학연금, 건강보험적용, 각종 세액공제 등)

제9조(의무) ① 계약제 전임교원 중 주당 책임강의 시간은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0~6시간, 교육·지도·산학전담교원은 9시간으로 하며,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강사료를 지급한다.<개정 2016.10.13.,2017.01.26.,2019.02.22.>

② 계약제 전임교원은 타 기관 및 대학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할 수 없다. 다만, 강의 또는 연구가 필요시 소관부서가 검토하고 총장이 승인 한다.<개정 2017.01.26.>

③ 계약제 전임교원은 지정한 기일까지 업적평가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01.26.>

④삭제<2013.04.04.>

제10조(신분보장 등) ① 계약제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재임용 평가의 탈락,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법인정관과 교원 인사관리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소속 전공의 개폐에 의한 경

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7.01.26.>

② 계약기간 중 법령 또는 이 대학교의 제규정에서 정한 면직사유가 발생되거나 계약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임면권자가 직권 면직할 수 있다.<개정 2016.10.13.>

제11조(휴직) 계약제 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휴직을 할 수 없다. 다만, 질병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에 한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한다.<개정 2016.10.13. 2017.01.26.>

제12조(처우) 계약제 전임교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16.10.13. 2017.01.26. 2017.01.26.>

제3장 보칙

제13조(운영세칙 등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동원학원 정관 및 이 대학 학칙과 교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.<개정 2016.10.13.>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개정 2017.12.18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교육·지도전담교원은 교육·지도·산학협력전담교원으로 본다.